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6차)**

**2020. 5. 15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h·well*  
**국민건강보험**



# I 목적 및 기본원칙

## □ 목적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6차)」 안내

## □ 기본원칙

- 동 지침은 원칙적으로 2020년 **5월, 6월(급여제공월 기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임.

| 연번            | 특례별 구분                             | 6차(5~6월) 주요 내용                                                                                                                                                                                                                                                                        | 적용월          |                        |  |        |               |                |  |                       |     |
|---------------|------------------------------------|---------------------------------------------------------------------------------------------------------------------------------------------------------------------------------------------------------------------------------------------------------------------------------------|--------------|------------------------|--|--------|---------------|----------------|--|-----------------------|-----|
| 1             |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특례               | <div><div>· (확진자) 완치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인정</div><div>· (격리자) 최대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div><div>· (해외 여행력) 입국 시점에서 최대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div><div>· (예방적 격리) 최대 10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div></div>                                                                                        | ~6월          |                        |  |        |               |                |  |                       |     |
| 2             |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                     | <div><div>· (업무배제자) 최대 15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div></div>                                                                                                                                                                                                                               | ~6월          |                        |  |        |               |                |  |                       |     |
| 3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 중단 지침                  | <div><div>·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최대 0.2점 인정</div><div>- 외부인에 의한 집단감염 예방조치로 5월은 최대 0.2점만 인정하며 6월 인정 여부는 추후 재공지</div></div>                                                                                                                                                                    | 5월           |                        |  |        |               |                |  |                       |     |
| 4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           | <div><div>· 방문상담(1회)을 원칙 → 수급자(동거가족) 또는 사회복지사의 확진(자가격리 필요 상황 포함), 수급자(보호자)의 명시적 거부 상황 시에 유선 상담(2회) 인정</div></div>                                                                                                                                                                     | ~6월          |                        |  |        |               |                |  |                       |     |
| 5             | 주야간보호 '한시적 코로나 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산정 기준 | <div><div>· 휴원권고 이행기관</div><table><tr><th>구분</th><th>해당 일 정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th></tr><tr><td></td><td>30% 이하</td></tr><tr><td>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td><td>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td></tr><tr><td></td><td>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td></tr></table><div>※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30% 초과 ~70% 이하는 폐지</div></div> | 구분           | 해당 일 정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  | 30% 이하 | 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 |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  |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 | ~6월 |
| 구분            | 해당 일 정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                                                                                                                                                                                                                                                                                       |              |                        |  |        |               |                |  |                       |     |
|               | 30% 이하                             |                                                                                                                                                                                                                                                                                       |              |                        |  |        |               |                |  |                       |     |
| 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 |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                                                                                                                                                                                                                                                                                       |              |                        |  |        |               |                |  |                       |     |
|               |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              |                                                                                                                                                                                                                                                                                       |              |                        |  |        |               |                |  |                       |     |
| 6             | 시설급여기관급여비용산정기준                     | <div><div>· 감염 수급자 외박 시 1회 최대 15일 외박비용(50%) 인정</div></div>                                                                                                                                                                                                                            | ~6월          |                        |  |        |               |                |  |                       |     |
| 7             | 특별재난지역 등(대구·경북) 특별 지침              | <div><div>· 특별관리지역 소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퇴사 시 감산 미적용</div></div>                                                                                                                                                                                                                              | ~6월<br>(가공자) |                        |  |        |               |                |  |                       |     |
| 8             |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문 인력 배치 의무 특례           | <div><div>· 프로그램관리자 미배치 시에도 급여비용 한시적 인정</div></div>                                                                                                                                                                                                                                   | ~6월<br>(가공자) |                        |  |        |               |                |  |                       |     |

- ※ 기존 3 ~ 5차 지침 중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 특례, 5등급 한시적 일반 방문요양 인정 특례, 월 한도액 추가산정기준 특례, 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 특례는 2020.5.부터 종료됨.

## Ⅱ

#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 1.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특례

- ☐ 종사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치료 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급병가’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 인정
  - (확진자 발생 시) 완치 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 인정
  - (의심되어 격리 시)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근무시간 인정
    -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병가일수’와 별도산정 가능(예외코드)
    -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항공권 등 치료·격리 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반드시 보관
  - (적용월) 2020. 5. ~ 6. (2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 ☐ 종사자가 해외를 방문한 경우 감염 예방 차원에서 증상 유무를 떠나 업무배제를 하고 ‘유급병가’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 (해외여행력 종사자) 입국시점부터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병가일수’와 별도산정 가능(예외코드)
    - ※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등 보관 필요
  - (적용월) 2020. 5. ~ 6. (2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 ☐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예방적(코호트)격리\* 또는 시설장의 판단(주야간보호 휴원 등) 하에 일부 종사자를 적극적 업무배제 하는 형태로 운영한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시간 일부 인정

- \*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격리 조치를 의미하며, 이 경우 ‘예방적 격리’ 관련 지자체에 제출한 신청서 또는 자체 수립한 관련 계획(종사자의 근무형태와 근무일정, 종사자 업무배제 상황, 사유 등 포함)을 수립하여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 1일 8시간,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병가일수’와 별도산정 가능(‘예방적 격리’ 코드)

※ 예방적 격리 사유(적극적 업무배제 사유 포함)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됨.

- (적용월) 2020. 5. ~ 6. (2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 2.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

□ 감염된 수급자 또는 종사자가 발생하여 시설을 폐쇄해 시설내에서 함께 격리된 경우

○ (업무배제자)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병가일수’와 별도산정 가능(‘코호트 격리’ 코드)

\* 이 경우 코호트 격리를 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 (적용월) 2020. 5. ~ 6. (2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 코호트 격리를 한 해당 월에 한하여 급여비용 감액산정이 되더라도 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이 경우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야간직원 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가산은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

- (적용월) 2020. 5. ~ 6. (2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 3.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인정 기준

-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외부인의 출입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강사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은 월 8회 이상 제공한 경우 가산점수를 최대 0.2점 인정
  - (적용월) 2020. 5. (1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 ※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관련 6월 인정 여부는 추후 재공지

### 4. 주야간보호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 지침

- 면역력이 저하된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의 휴원 권고 연장에 따라 실제 휴원 이행 시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인정 확대 운영
- 휴원 권고에 따라 2020. 5. ~ 6. (2개월간 평일 기준) 기간 동안 ① 수급자에게 휴원안내 및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② 최소한의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③ 휴원 요건 충족(긴급돌봄이용자가 정원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일자에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청구 가능
  - (적용월) 2020. 5. ~ 6. (2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 (대상기관) 긴급돌봄 이용자 수가 정원 대비 30% 이하인 경우만 지원
  - (보상비용) ① 긴급돌봄 이용자 → 급여비용 100% 지급
  - ② 긴급돌봄 미이용자 → 해당 일에 해당 기관의 정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30% 이하에 해당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지급

### <주야간보호기관 휴원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준>

1. 장기요양기관은 휴원권고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문자, 유선 등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보관하여야 함.  
 ※ 긴급돌봄 수요조사 : 장기요양기관이 휴원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 중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거, 보호자 맞벌이 등 가족돌봄이 어려워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
2. 장기요양기관은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 수급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 비율 준수
3. 장기요양기관 긴급돌봄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도 필수인력(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그 외 직종 1명 등 총 3명)을 배치하여야 함(정원 10인 이하는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 기존 고시상의 '미이용일 급여비용' 만 산정 시에도 동일함.

### □ 휴원 권고 이행기관의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산정기준

◆ (기본원칙) 2020년 5.1.~ 6.30. 에 한하여 휴원 안내 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일자의 미이용자에 대해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이하 '코로나 특례비용')'을 추가 산정 ... 산정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

※ 기존 고시(제32조제3항)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휴원 시에도 기존 고시 기준대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기관이 선택하여 청구 가능

#### ◆ (주요원칙)

- ① (대상) 전월 말일까지 해당 월 급여계약이 적기 통보된 수급자이면서, 2020.2월 기준 최소 1일 이상 해당 기관에서 실제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가 미이용한 일자 ... 휴원권고가 4.1.부터 연장됨에 따라 '해당 월 중 최소 하루 이용 기준'을 '2020. 2월 중 최소 1일 이용'으로 변경함.

#### ② (인정일수)

| 적용기간                                                                                      | '코로나 특례비용' 인정 일수                                                                    |
|-------------------------------------------------------------------------------------------|-------------------------------------------------------------------------------------|
| (공통사항) 5, 6월분 적용하는 '코로나 특례비용'은 해당월 최소 1일 이용 요건을 대신하여 2020년 2월 중 최소 1일 실제 이용 요건을 충족 시 산정함. |                                                                                     |
| 5~6월                                                                                      | 긴급돌봄이용자가 30% 이하(소수점이하 반올림)에 해당하는 일자에 한하여 '코로나 특례비용' (최대 20일(5월)~ 22일(6월)) 인정(평일 기준) |

- ③ (인정비용) 전월 말일 기준 공단에 해당 수급자의 급여일정이 적기  
 통보된 일자(월~금요일(근로자의 날 포함), 공휴일 제외)에 미이용 시  
 등급별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사망일, 해외출국일 적용불가) 지급

\* 일자별 정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에 따른 인정비용 세부기준

| 구분            | 해당 일 정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
|---------------|------------------------|
|               | 30% 이하에 해당하는 일자        |
| 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 |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
|               | 본인부담금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   |

※ 5~6월분은 반드시 전월 말 기준 적기통보 내역(일정등록 포함)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하며, 당월 수정(추가) 통보 건은 산정 불가

※ 고시 제31조의‘라-3’의 60%(치매전담실은 제74조의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의  
 60%)를 최대 한도로 함.

- ④ (유의사항) 휴원기간 중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를 초과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 날에는 미이용자에 대하여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 불가 ... 기존 고시(제32조제3항) ‘미이용일 급여비용’ 월 5일은 고시  
 기준 충족 시에 산정 가능

#### ◆ (산정기준)

- ① 공단에 전월 말 기준 해당 월의 급여계약 통보가 되지 않은 수급자  
 는 적용불가
- ② 2020.2.1.~2.29.까지 월 하루도 실제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는 산정 불가
- ③ 기존 고시 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 및 월 중 1  
 일 이용요건을 충족 시 지급하나, 해당 특례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  
 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함.
- ④ 해당 월에 긴급돌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영 또는 해당 기간에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를 초과(소수점  
 이하 반올림)한 날에는 미이용자에 대하여 ‘코로나 특례비용’ 일체 산정  
 불가
- ⑤ 필수 인력배치 등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준(6p)을 준수하여야 함.
- ⑥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해당 월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과 ‘미이용일  
 산정비용(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및 ‘코로나 특례비용’)의 합  
 산한 금액이 해당 월 월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준 예외적용) … 2020.5.~ 6. 급여제공분 적용

① ‘코호트 격리’ 또는 ‘예방적 격리’를 시행하는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 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과 병설 운영

② ‘코호트 격리’ 또는 ‘예방적 격리’를 시행하는 입소형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만 해당되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병설 운영

③ ‘코호트 격리’ 시행 중인 의료기관과 동일 건물에서 운영

④ 해당 주야간보호기관의 소속 종사자 또는 이용자 중 확진자(밀접 접촉자)가 발생하여 지자체(보건소 등)으로부터 폐쇄, 운영 중단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 ①, ②, ③,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 긴급돌봄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코로나-19’ 특례비용 산정을 위한 필수 인력은 배치하고, ▲ 병설 운영시설과 물리적 장소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휴원 안내만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코로나 특례비용’을 인정함. (병설기관의 ‘코호트 격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 필수 보관)

○ (본인부담금) 수급자 비용 추가 부담 불가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수납

○ (월한도액) 미포함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포함됨.

○ (중복급여 사용)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 일자에 방문요양 등 타 급여 중복이용은 가능하나,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여를 이용 시 비용 산정 불가 … 수급자가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을 실제 이용한 일자에는 해당 ‘미이용일 특례비용’을 산정한 기관의 특례비용을 불인정함.

○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코로나 특례비용’에 한하여 급여비용 가감산 산정기준에서는 ① 입소자수, ② 월 가산 기준금액, ③ 급여 제공일수(긴급돌봄 받는 수급자가 전혀 없는 경우만) 제외함.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가감산 산정 시 ① 입소자수, ② 월 가산 기준금액, ③ 급여 제공일수에 포함됨.

- ①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는 고시 제47조제2항제1호의 해당 일자의 ‘입소자 수’에서 제외
- ② ‘코로나 특례비용’은 고시 제56조제1항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가산,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가산 금액 산정 시 ‘월 가산 기준금액’에서 제외
- ③ 해당 일에 부득이하게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만 있을 경우 입소자 수 계산 시 필요한 ‘급여제공일수’에서 제외(종사자가 배치되지 않은 날에는 해당 비용 산정불가)  
※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 외 실제 이용자가 있는 경우는 급여제공일에 포함됨.
- ④ 해당 일에 수급자 전원이 고시 제32조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 또는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만을 청구하는 날은 월 기준 근무시간 계산 시 필요한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하되, 해당 일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한시적 지원금) ‘코로나 특례비용’은 고시 제75조의2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산정을 위한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준수사항) ‘코로나 특례비용’은 주야간보호기관의 긴급돌봄을 전제로 한 휴원을 이행 시 지급하므로 ① 공단의 긴급돌봄 이용현황 등록 전산시스템 입력 ②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록하고 보관 필요

○ (청구기간) 2020. 6. 29. ~ 9. 30. 한시적 청구 가능 (5~6월분)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청구 가능

○ (청구종료일) 2020. 9. 30. ... 청구 전산화면이 한시적 운영되므로 반드시 적기청구 요함.

○ (행정사항)

⇒ 기존 고시상의 미이용일 급여비용(최대 월 5일) 대상자만 우선

하여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므로,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 대상자만 (청구전산화면) ‘가산 및 감액산정 / 입퇴소 내용관리 (주야간보호) / 입퇴소내용 신고 화면’에 등록

□ 휴원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종사자 미배치)한 경우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필요한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

○ 가산 또는 감액산정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고시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월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함.

※ 일정기간 실제 미운영한 경우 월 기준근무시간 산출식 : [해당월 중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미운영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 5.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방문상담(월 1회)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 유선상담(월 2회)을 제한적 인정  
\* 수급자(동거가족) 또는 사회복지사의 확진(자가격리 필요상황 포함), 수급자(보호자)의 명시적 거부 상황만 해당

###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예외 기준 원칙 >

◆ 수급자(동거가족) 또는 사회복지사의 확진(자가격리 필요상황 포함),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명시적 거부 상황 시에 한하여 방문상담을 유선상담(월 2회)으로 대체 인정

\* 급여제공 중(급여제공시간) 월 2회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하고, 유선상담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 되도록 노력 ... 기존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기재(월 2회)

◆ 수급자(보호자) 거부시에는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반드시 입증자료 또는 사실관계 기록(세부사항 별지 제24호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을 보관

-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가 격리되거나 **해외방문(사회복지사 동거가족 포함)**하여, 14일간 업무배제되어 시설장이 급여제공 시간 중 유선상담(월 2회)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

※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

-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월 중 방문요양 급여가 종료(완전 중단)된 경우, 방문상담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고시 제57조제2항에 준하여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

-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접촉자로 구분되었으나 방문요양 급여는 제공 중인 상황(일시중단 포함) 또는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해외를 방문하여 14일 간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담(월 2회)으로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

-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해 수급자(보호자)가 가정방문을 명시적 거부한 상황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유선상담(월 2회)으로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

\* 상담거부 대상자, 상담거부 일시, 상담거부 사유 등 수급자(보호자)가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을 거부하여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반드시 사실관계 기록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을 보관

- (적용월) **2020. 5. ~ 6. (2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 ◆ 월 중 급여가 일시중단 된 경우에는 수급자만 대상으로 안부확인 등 유선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
- ◆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와 사실관계를 기록, 보관하고 유선으로 확인한 수급자 안부, 걱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상담 내용을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에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유선상담을 월 2회 수행 시 사회복지사 가산을 위한 상담 횟수(월 2회)로 인정

## 6. 사례별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

### ☐ 감염된 수급자만 시설 외 장소로 격리 이송된 경우

- (격리기간 10일 이내) 격리기간만큼 외박비용 인정
- (격리기간 10일 초과) 연속하여 최대 15일 외박비용 인정

※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

### ☐ 수급자 전원이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 이송된 경우

- 격리기간의 일수에 따라 외박비용을 산정하되, 최대 15일 인정

※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

### ☐ 수급자 전원과 종사자가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된 경우

- 시설(단기보호 포함) 외 타 장소에서 해당 기관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1일당 급여비용 인정